

제 6 차 실행이사회

○ 일시 : 1986. 6. 27 (금) 07 : 30 - 09 : 15

○ 장소 : 본회 회의실

(협의사항)

1. 협조체제 유지

양만규 서울특별시지부장과 하호욱 사무총장이 사립종합병원 진료실태 점검 결과에 대해 서울시 의약과장과 면담 협의한 결과 향후 병원에 대한 실태 점검은 본회와 합동으로 실시하여 물의가 조성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협의가 있었음을 보고 받고 평소 협회가 관과의 협조체제를 긴밀히 유지함으로써 불공정한 처사로 인해 회원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전력해 나가기로 하다.

2. 자보수가 대책

근간 한국자보와 손보회사측이 자보수가를 의료보험 또는 산재수가와 동일하게 일정기준에 따라 적용하도록 법적장치를 건의하는 등 움직임이 재연되고 있는 사실을 중시하고 협회차원에서 보다 항구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므로 본회 자보 대책위원회에 상정 검토할 것이며 그들의 주장이 불합리한 점을 구체적으로 근거있게 제시하는 등 대책을 강구해 나가기로 하다.

3. 의료 부조리 미연 방지 대책

정 건강관리소 사건을 계기로 병원의 부조리 유형을 조사 분류하여 병원 직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실시와 기존 정화위원회 운영을 보다 강화하여 자체 정화에 노력하고 병원 표준화 사업의 QA 활동을 보다 강화하여 자체점검이 가능할 것이므로 QA 심사요강을 보완하는 한편 의료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병원계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지적, 경고 등으로 시정하도록 자율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기로 하다.

(승인사항)

1. 수협(어민) 진료기관 지정계약 승인

어민중 생명공제 및 선원 특수공제계약 어민과 그 가족에 대해 수협이 진료비를 지급 보증하는 진료기관 지정계약에 관하여는 농가 진료비 대지급계약과 동일한 계약조건으로 추진할 것을 승인하다.

2. 예산 집행 제도 개선 시행(안) 승인

본회 예산집행의 합리화와 예산절약을 위한 동 시행(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하되 공개경쟁 입찰 예정금액 200만원 이상을 100만원으로, 지명 경쟁입찰 예정금액 200만원 이하를 100만원 미만 30만원 이상으로 수정하여 잠정적으로 시행해 나가면서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여 규정화시키기로 하다.

3. 이사보선

이영균 상임이사 (전 서울대학교 병원장)의 병원장 사임에 따른 후임이사는 관례에 따라 한용철 서울대학교 병원장을 선임키로 하고 이사회에서 추인받기로 하다.

제 7 차 실행이사회

○ 일시 : 1986. 7. 4 (금) 07 : 30 - 08 : 55

○ 장소 : 본회 회의실

(협의사항)

1. 국민개보험 대비책 강구

정부가 89년도까지 국민 개보험을 추진함에 있어 현행 제도상의 불합리한 문제들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그 피해가 결국 의료기관으로 돌아갈 우려가 있으므로 지금부터라도 자체적인 조사연구 활동을 강화하여 전국민 의료보험에 대비한 합리적인 접근방안을 제시하도록 협회 차원에서 노력을 경주할 것이며 금년에 개최될 제2차 병원관리종합학술대회에서도 병원운영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현행의료보험 제도상의 모순과 문제점들이 분야별로 발굴·거론되도록 추진키로 하다.

2. 병원회보 수지균형 유지노력 계속

병원회보 수입원은 주로 제약회사의 광고계재료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나 초기 단계에는 여러가지 제약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향후 6개월간은 수지균형 유지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광고수입을 높이기 위한 배전의 노력과 불요불급한 경비 지출은 최대한으로 억제하는 등 자체적인 노력을 계속키로 협의하다.

3. 환자권리선언 대책

최근 「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회장 김동환)에서 정 건강관리소 사건을 계기로 「환자권리선언」을 재연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박승서 고문변호사를 통해 본회 공동참여를 제의해온 데 대하여 본회 불참리에 일방적인 선언이 되도록 방지할 수도 있으나 현재 의료계가 처해 있는 상황이 불리하기 때문에 일단 참여하여 본회 의견을 관철시키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으므로 백낙환 회장에게 위임하여 김동환 변호사와 개별적으로 접촉하는 등 신중히 대처해 나가기로 하다.

제 8 차 실행이사회

○일시 : 1986. 7. 11(금) 07:30 - 09:05

○장소 : 본회 회의실

(협의사항)

1. 환자권리선언 실무 협의추진

백낙환 회장이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회장 김동환) 측이 추진중인 「환자권리선언」은 현재 의료계가 처해있는 상황으로 보아 그 시기가 적절치 못하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신중히 다루어 나가자고 제의한 결과 상대측에서도(시민의 모임) 사무처장이 현재 외국 출장중에 있으므로 귀국 후 본회 사무총장과 구체적인 실무협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었음을 설명한 바 별 이의가 없으므로 실무 협의를 추진키로 하다.

2. 본회 예산항목 조정 및 규정개정 방향상정

박성덕 재무이사가 '86년도 예산 중 총회비 및 기타위원회비는 당초 예산보다 이미 초과 집행되었고 국제교류비 및 병원관리종합학술대회비는 과다

책정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검토 후 예산항목의 조정을 이사회에 상정하겠으며 본회 규정개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어떤 방향과 방법으로 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차기 실행이사회에 상정 토의하자는 제의를 한 바 별 이의없이 받아들이다.

3. 정부 의료 정책에 관한 대책 강구

6차 5개년 계획의 「보건의료부문」 계획(안)을 보고 받고 동계획이 향후 의료계에 미칠 영향이 지대함을 감안하여 본회는 병원계의 여망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특히 기획이사 및 보험이사 주도하에 사무국의 실무적인 연구기능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실제 정부의료정책 입안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예방의학교실의 교수들과의 간담회와 자문활동을 병행해 나가기로 협의하다.

4. 본회 자문제 활성화 방안 상정

정부의료정책과 관련하여 황태식 학술이사가 수차 그 필요성이 강조된 바 있는 정계 및 의료계 원로자문제 활성화 방안을 차기 실행이사회에서 구체적으로 상정토의하자는 제의를 한 바 별 이의없이 받아들이다.

(승인사항)

1. 의료보험실무 연구회 개최 승인

전국민 의료보험 실시에 대비하여 병원계가 바라는 정책방향을 실무적으로 모색할 수 있도록 동 의료보험실무연구회 개최를 승인하되 예방의학 교수 초청 간담회도 병행해서 개최하여 필요한 자문을 받도록 승인하다.

제 9 차 실행이사회

○일시 : 1986. 7. 25(금) 07:30 - 09:05

○장소 : 본회 회의실

(협의사항)

1. 환자권리선언 대책

이인수 기획이사의 대한주부클럽연합회가 주최한

소비자보호세미나('86. 7. 16)에 참석한 결과와 그리고「환자권리선언」과 관련하여「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및 의협 문태준회장과 접촉한 결과에 대한 보충설명을 들은 다음 본회로서는 동 선언이 일방적으로 선언될 경우 기정사실화되어 병원계에 불리하게 작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상호 대화를 계속 유지하면서 일방적인 선언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기존방침을 고수해 나가기로 하다.

2. 장기체납 회비 분납 방안 검토

회원병원이 회비를 누적적으로 미납하게 되면 협회 참여의욕도 낮아지기 때문에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도 회비납부를 계속 독려하되, 장기간 누적된 미납병원에 대해서는 1개년분씩 분납토록 유도하는 방안을 병행해 나가기로 하다.

3. 의료기사법중 개정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견 제출

안경사 제도와 관련된 의료기사법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회원병원들로부터 제시된 의견대로「안경사」로만 호칭될 경우 검안 및 처방도 가능한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안경제조사」로 그 호칭을 변경하고 「안경제조사」의 정의도 안과 의사의 검안과 처방에 의해서만 안경의 제조 및 판매가 가능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안과학회 의견과도 일치하므로 본회의 의견으로 보사부에 제출키로 협의하다.

4. 심폐기사, 뇌파기사 등의 자격제도 신설 건의에 대한 본회의견 제출

현재 의사의 지휘감독 아래 간호원, 의료기사 및 기타요원 등을 일정기간 교육훈련 후 활용하고 있으며 따라서 자질면에서 격차가 많고 인력수요와 공급면에서도 균형유지가 어렵기 때문에 성급히 자격제도를 신설할 경우 병원의 인력운영에 혼란과 차질만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보다 더 장기적으로 시행하면서 신중한 연구검토가 선행되도록 본회의견을 집약하는 문제를 회장단에 위임하다.

5. 규정개정 소위원회 구성 및 업무위임

본회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키 위해 「규정개정소위원회」를 구성하되(총무, 법제, 재무이사) 규정보완 대상 범위 및 추진일정 등 업무일체를 동 위원회에 위임키로 하고 동 소위원회에 김봉태 감사를 추가시키기로 하다.

6. 의료법 중 개정법률안 상정 토의

보사부가 공고(제86-34호, '86. 7. 25)한 의료법중 개정법률 입법예고안을 사전에 실행이사에게 배포하여 차기 실행이사회에 상정 토의키로 하다.

제10차 실행이사회

○일시: 1986. 8. 1 (금) 07:30-09:05

○장소: 본회 회의실

(협의사항)

1. 각종 보험진료비 체납 대책

의료보험 진료비를 포함한 각종 진료비 특히 직종보험 및 자보 환자 진료비가 만성적으로 적체되고 있는 현실을 중시하고 본회가 각 진료비 지급기관에 계속 지급독촉을 하는 한편, 장기 고액 적체 진료비에 대해서는 병원별로 법정소송을 제기하는 강경책도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므로 본회가 단체행동으로 결의할 수는 없지만 권장하는 문제를 본회 법률 교문의 자문을 받아 필요한 대책을 강구키로 하다.

2. 고가 특수의료장비 도입규제 방안검토

고가 의료장비의 경쟁적인 도입이 의료비 상승의 요인이 되어 병원들의 경영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무절제한 도입은 규제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고가 장비도입 심사위원회에 병원계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대표 1명을 3명으로 증원시키도록 보사당국과 절충하고 심사기준에 지역별 인구비례도 반영되도록 요청키로 협의하다.

3. 의료법중 개정법률(안)대책

동 개정법률(안) 제3조(의료기관) 3항에서 입

원환자 8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종합병원에 정신과를 추가 설치토록 한것은 정부의 아무런 지원 없이 의료기관에 대해서만 의무를 강요하는 것이므로, 정부가 금융지원을 해주는 조건으로 최소한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에 한해서 정신과를 설치하는 것으로 주장되어야 될 것이며, 동 제20조기록(사본)의 송부에 따르는 문제점과 동 제43조에서 의료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보고토록 명하거나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한것과 동 제45조에서 의료법인의 임원개선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은 정책적인 측면에서 소망스럽지 못하다는 본회 의견을 정리하여 제 2차 상임이사회('86.

8. 7 소집)에 상정하고,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인천 등 5대도시 공청회를 본회지부와 해당시 의사회와 공동 개최키로하되 공동 개최시의 본회 시도 지부 부담경비중 반액은 본회예산에서 지원키로 협의하다.

4. 이 사 보 선

최성근 전 지방공사 춘천의료원장 겸 강원도 지부장의 병원장 사임에 따른 후임 이사에는 관례대로 정원석 지방공사 춘천의료원장겸 강원도 지부장을 선임키로 하고 차기 이사회에서 추인 받기로 하다.

■編輯委員：韓斗鎭·朴利甲·金教命·黃泰植·梁萬奎

대한병원협회지

(通卷 136 號)

'86년 8월호(月刊)

등록일자: 1972년 4월 27일

등록번호: 제 라 1691호

인쇄일: 1986년 7월 31일

발행일: 1986년 8월 1일

發行人: 白樂暉

編輯人: 黃泰植

印刷人: 朴善奎

발행소 社團法人 大韓病院協會

우편번호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 2가 49 전화: 272-8905

JOURNAL
OF
THE KOREAN
HOSPITAL ASSOCIATION

Vol 15, No. 8

Aug. 1986

Publisher: Nak Whan Paik

Editor in Chief: Tae Sik Hwang

Published Monthly

by

The Korean Hospital Association
49, 2-Ga, Chung Moo-Ro,
Seoul, Korea TEL. 272-8905

*이協會誌에 게재된 내용은 반드시 公式的인 의견을 대변하는 것은 아닙니다.